

안녕하십니까?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.

귀하께서 국세청 기관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의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
귀하의 민원 내용은 “결제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 여부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
PG(Payment Gateway)와 VAN(Value-Added Network) 모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를 결제하는 결제방식의 일종으로,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느 한쪽의 결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
이는 사업자의 선택이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**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신고**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.

부가가치세법 제29조 [과세표준]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해당 조항은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**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타 다른 법령에서도 결제방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**

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제방식을 선택하시고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.

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,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**국세상담센터**(국번 없이 126) 나 **홈택스**(www.hometax.go.kr)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관련 법령 : 부가가치세법 제29조(과세표준)

작성 부서 :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| 126